2013. 7. 19.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 안 자 (제안설명)	비 고
1541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명권	
1508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장 (도로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8	7.8	7.15	7.15	강명권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15	5.15	5.22	7.15	도로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자전거 보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나. 협동조합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7조)

라. 협동조합의 경영지원, 행정·재정지원, 교육·홍보지원에 대해 정함. (안 제8조 ~ 제10조)

마.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2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자전거”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나.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다. 인용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 온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연도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그 결과를 평가·환류하도록 하여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영지원, 행정·재정지원,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이나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를 현재 **충청북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충주시**는 교육·홍보 및 설립신고 절차 안내 등의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아직 구체적 업무 위임 및 이관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밀착형 조직인 협동조합이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사유로 조례제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개정안은
안 제7조의 2에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례 제7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자전거 보험가입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1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질의 없음

2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질의: 충주시민 뿐만 아니라 관내구간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타지인(동호회 방문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2) 질의: 자전차 운행의 도로교통법 적용과 관련 일반상해보험으로 개별 보상가능하지 않은가? 이중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도로교통법상 대상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1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